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7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남인순・이기헌・강선우

김남근 • 김원이 • 민형배

위성락・김 윤・이재정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 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 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를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부터"로, "投票마감시각까지"를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투표소로부터"를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로, "투표마감시각"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2
姓名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누구든지 選擧	
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送	
局·라디오放送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	
문사가 選擧의 결과를 예상하	
기 위하여 選舉日에 投票所로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
<u>부터</u> 50미터 밖에서 投票의 秘	일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密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u>부터</u>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u>投票마감시</u>	
<u>각까지</u>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	<u>선거일의 투</u>
할 수 없다.	표마감시각까지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 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u>투표소로부터</u>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u>투표마감시각</u>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② (현행과 같음)